



: 2020-10-28

##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

### 제 1 민 사 부

### 판 결

사 건 2019가합10733 손해배상(지)  
원 고 A 아이엔씨  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 
담당변호사 최에스더, 김창환, 윤아영  
피 고 B  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지원  
담당변호사 김주환  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민수  
변 론 종 결 2020. 8. 20.  
판 결 선 고 2020. 9. 10.

### 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# 청 구 취 지



: 2020-10-28

피고는 원고에게 3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서 C, D, E, F<sup>1)</sup>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,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'G'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.

나. 원고의 대리인이 2018. 8. 31. G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들을 점검하였는데, 그 결과 G 직원 H이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장치에서 원고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C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 및 그에 대한 크랙 파일이 발견되었다.

【인정 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주장 및 판단

#### 가. 원고의 주장

피고의 직원이 무단으로 C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 및 크랙 파일을 컴퓨터에 복사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,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정한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프로그램의 정품 가격 360,000,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#### 나. 판단

1)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으로서 피용자에게 불법행위의 일반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하므로(대법원 2014. 7. 24. 선

1) 원고의 CAD(Computer Aided Design), CAE(Computer Aided Engineering), CAM(Computer Aided Manufacturing) 프로그램을 통칭하는 것으로 제품명에 포함된 숫자가 클수록 최신 버전을 의미한다. 각 I시리즈는 G에서 사용한 J등과 같은 개별 소프트웨어들을 포함하고 있다.



고 2013다70019 판결 등 참조), 원고로서는 먼저 피고의 피용자가 원고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는 점을 주장·입증하여야 한다.

2) 그런데 G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중 1대에서 C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과 크랙 파일이 발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,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피용자가 위 설치 파일과 크랙 파일을 위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가) G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들 중에서 H이 사용한 컴퓨터 1대에서만 위 설치 파일 및 크랙 파일이 발견되었을 뿐 나머지 컴퓨터들에는 D 또는 E 프로그램의 정품만이 설치되어 있었고, H이 사용하던 컴퓨터에도 E 프로그램의 정품이 설치되어 있었다.

나) H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설치 파일의 최종 수정 일자는 2013. 5. 31.이고, 크랙 파일들의 최종 수정 일자는 2014. 4. 7.인데, 피고는 2011년경부터 I 프로그램 정품을 대여하여 사용하여 왔다.

다) G 사무실이 피고와 피고의 직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, G의 거래처 직원 등 제3자가 위 파일들을 H의 컴퓨터에 복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

3) 따라서 피고의 피용자가 C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 3. 결론



: 2020-10-28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 판사      최철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판사      손광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판사      조민혁